

멸실 인정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

- 「자동차관리법」 제13조제1항제8호 및 「자동차등록령」 제31조제5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멸실된 것으로 인정된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「자동차등록령」 제31조제6항 및 「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」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말소등록 하고자 압류·저당권자 등에게 예고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
- 예고기간 내에 이해관계인이 권리행사 절차 진행 및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말소등록 됨을 알려드립니다.

1. 공 고 기 간 : 2026. 8. 26.(수) ~ 2026. 9. 9.(수) 15일간

2. 공고대상 및 내용

차량번호	송달 대상자		자동차 소유자		말소예정일	이해관계 내용 (을부번호)
	성 명	주 소	성 명	사용본거지		
부산30더4431	김덕수	경상남도 양산시	조상호	부산광역시 기장군	2026.9.28.	2601-2002-059547
부산29모9149	(주)코리아 브릿지론	부산광역시 부산진구	박이묵	부산광역시 서구	2026.9.28.	2601-2002-054847

3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(☎051-290-5430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26. 8. 26.

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